

# **Corporate Governance Report 2018**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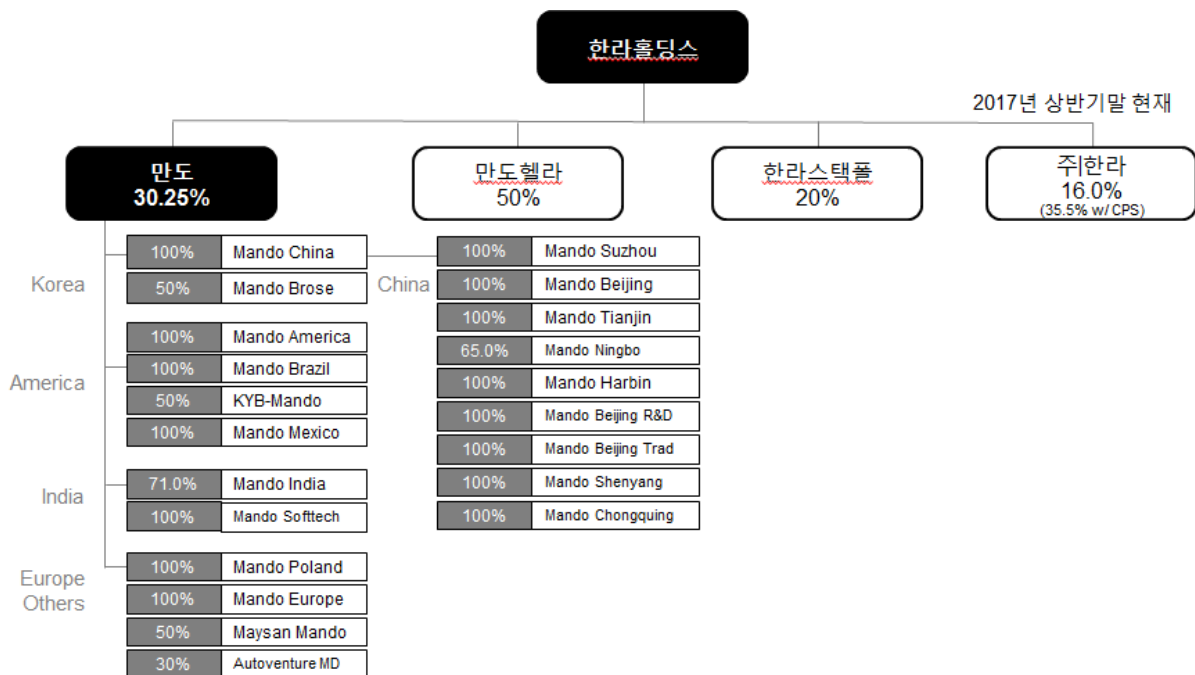
<b>1. 회사 개괄</b> .....	<b>3</b>
<b>2. 주주</b> .....	<b>4</b>
(1) 발행주식 및 최대주주 .....	4
(2)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4
<b>3. 이사회</b> .....	<b>5</b>
(1) 구성 및 선임.....	5
(2) 구성원.....	5
(3) 운영 및 기능.....	9
(4) 이사회 內 위원회 .....	9
(5) 평가 및 보상.....	11
<b>4. 내부감시기구</b> .....	<b>11</b>
<b>5. 외부감사인</b> .....	<b>11</b>
<b>6. 기타</b> .....	<b>12</b>
(1) 이해관계자 소통.....	12
(2) 사회공헌.....	12
<b>별첨1. 정관</b> .....	<b>14</b>
<b>별첨2. 이사회규정</b> .....	<b>28</b>

## 1. 회사 개괄

당사는 2014년 9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2014년 9월 2일에 주식회사 한라홀딩스(이하 "한라홀딩스")의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 자회사 및 합작투자사를 설립하여 생산, 연구, 실차 테스트 등의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의 생산법인과 터키, 말레이시아의 합작투자법인에서 제동, 조향, 현가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평택, 원주, 익산 3곳의 공장에서 핵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림1. 회사 지배구조>



## 2. 주주

### (1) 발행주식 및 최대주주

정관 제5조에 따라 당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이며, 정관 제6조에 따라 주식 일주의 액면금액은 1,000원입니다. 회사는 2018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의 총수, 발행가능 주식 종류 및 액면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46,957,120주로 현재 보유중인 자기주식 132,480주를 제외하면,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46,824,640주입니다.

2017년말 기준(제4기 사업보고서 공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이며, 지분율은 30.3%입니다. 그 밖에 국민연금공단 10.2%,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7.2%,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가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 주주들의 지분율은 5% 미만입니다.

최대주주인 한라홀딩스는 2014년 9월 1일자로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1일 종속회사인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 12월 31일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그룹 IT센터를 영업 양수하였습니다.

한라홀딩스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 수취, Halla(한라) 및 Mando(만도) 브랜드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수익 수취, 그룹 IT 센터의 IT 제품·용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지주사업과 2015년 흡수합병을 한 한라마이스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2)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운영 중이며,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됩니다.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정으로 소집되며, 이사회 결정일 당일 당사는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2주전에 의안 내용과 함께 소집통지서 발송과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이며,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의결권의 과반수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안건의 승인을 결의합니다.

### 3. 이사회

#### (1) 구성 및 선임

당사 정관 제33조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조직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임에 따라 총 11명의 이사 중 사외이사는 6명입니다. 사외이사는 국내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되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됩니다.

회사는 정관 제 3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한 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당해 회사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i) 각자 대표이사 또는 (ii) 공동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대표이사는 복수의 대표이사가 대표권한을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공동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모두의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CEO 정몽원 회장과 COO 송범석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각자 대표이사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 (2) 구성원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당사의 CEO, COO, CFO 등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로 선임되어 있고, 사외이사는 변호사, 대학교수, 은행가 등 법률 및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1. 이사회 구성현황>

구분	성명	출생년월	현직	선임일	임기 만료일
대표이사	정몽원	1955.08	(주)만도 대표이사(CEO)	2017.03	2020.03
대표이사	송범석	1956.01	(주)만도 COO겸 Mando Korea 총괄	2018.03	2021.03
사내이사	김광근	1957.09	(주)만도 CMO	2018.03	2021.03
사내이사	탁일환	1959.11	(주)만도 CTO	2018.03	2021.03
사내이사	김만영	1959.12	(주)만도 CFO	2018.03	2021.03
사외이사	김영수	1942.05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2017.03	2020.03

사외이사	이종휘	1949.01	前 우리은행장	2017.03	2020.03
사외이사	김대식	1955.01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03	2020.03
사외이사	김한철	1955.04	법무법인 광장 고문	2017.03	2020.03
사외이사	김현수	1953.05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2017.06	2020.05
사외이사	김경수	1960.06	김경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06	2020.05



정몽원 대표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만도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현재 한라그룹 회장 및 당사 대표이사 CEO를 맡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와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석사 학위(MBA)를 취득했습니다.

2008년 한라그룹을 통해 당사를 인수한 이래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그룹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해외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과 거래를 확대하는 등 회사 성장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회사의 장기 비전과 전략방향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범석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당사의 전신인 만도기계에 입사하여 현가사업본부 생산부를 거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회사 만도 현가사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30년 이상 현장에 몸담으며, 당사 현가장치의 기술력 및 생산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COO(Chief Operating Officer) 및 Mando Korea 총괄을 겸직하며, 노동조합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국내 사업 안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광근 이사는 인하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1986년 만도기계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이래 제동, 조향 영업팀을 두루 거쳤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독일 Hella사와의 합작법인인 (주)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영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Global Sales & Marketing을 총괄하는 CMO(Chief Marketing Officer)를 맡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영업업무에 몸담으며 구축한 고객사와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당사 매출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탁일환 이사는 당사의 Global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CTO(Chief Technology Officer)를 맡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1985년 만도기계에 입사했습니다.

신차개발지원실장, 조항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당사 제동, 조향 장치의 연구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고, Global 자동차 부품시장의 후발주자로서 당사가 세계 선도 자동차부품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기술력 확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김만영 이사는 서울시립대에서 회계학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오랜 기간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한 재무/회계 전문가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라그룹 정도경영실장을 역임하며, 사내에 윤리, 투명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7년부터 주식회사 만도 Global Management 총괄 및 CFO(Chief Financial Officer)직을 맡아 회사의 장기 성장전략 수립,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개선 등을 포함한 기획 및 재무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사는 196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을 역임했습니다.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제33대 문화체육부 장관, 2014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직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검찰, 장관을 비롯한 오랜 공직생활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등 문화체육계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휘 이사는 1970년 한일은행에 입사하여 2002년 한빛은행 부행장,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직을 역임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에 새로운 금융기법과 상품을 제안하는 등 재무구조 선진화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조연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식 이사는 1978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행 국제금융부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직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1998년부터 2004년까지 SK텔레콤 사외이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한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Wharton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외부 주주들의 추천으로 선임되었으며, 전공지식과 타사 사외이사 경험을 토대로 당사에서도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권의 보호를 최우선시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적법성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서 관련 개선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이사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현대엔지니어링 기계부에서 근무했으며, 1986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식경제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 기획위원과 한국자동차 공학회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부문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동차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각각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앞선 언급한 대로 기계, 메카트로닉스 등 국내 자동차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기술 발전과 사업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철 이사는 1978년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11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내 최대 국책 은행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에 많은 조언을 하고 있으며, 당사 감사위원회 일원으로서 재무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감시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이사는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8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2013년 대전고등검찰청 및 부산고등검찰청 고검장, 2015년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는 김경수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연세대학



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오랜 검찰 경력에서 나오는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조언은 물론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으로서 회사가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3) 운영 및 기능

이사회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실시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됩니다.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되며,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합니다.

#### ① 상법 상 이사회 의결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사채의 발행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 ②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 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 자회사 자본불입 및 차입을 위한 보증 승인
-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 ③ 기타 법령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상 결의요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 (4) 이사회 內 위원회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송범석 대표이사)과 사외이사 2명(김영수 이사, 이종휘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의거 설치·운영 중이며, 법령 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사외이사들 중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김한철 이사, 김현수 이사, 김경수 이사)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합니다. 또한 필요 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김대식 이사, 김현수 이사, 김경수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 보고 받고 심의 의결하며, 언제든지 내부거래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2.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표2. 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이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대표이사	정몽원			
대표이사	송범석		●	
사내이사	김광근			
사내이사	탁일환			
사내이사	김만영			

사외이사	김영수		●	
사외이사	이종휘		●	
사외이사	김대식			●
사외이사	김현수	●		●
사외이사	김한철	●		
사외이사	김경수	●		●

(5) 평가 및 보상

당사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임원의 보수는 매년 개인별로 협의를 통해 책정되며, 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보수한도 내에서 책정 및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실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100억원의 보수 한도를 승인 받았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연봉범위 내에서 임원의 자질과 성과를 종합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4. 내부감시기구**

당사는 내부감시기구로서 그룹 내 독립된 조직인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정도경영실은 그룹 내 회사들의 업무처리의 타당성 검토, 관계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조회 및 자료 요구 그리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감사는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연도별 감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별감사는 경영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정도경영실장이 특정 부분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외부감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당사 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선임에 대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삼일회계법인이 당사의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되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 향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연간 감사일정 계획 및 감사 결과, 용역계약 체결 현황 그리고 회계 및 감사 관련 최근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 6. 기타

### (1) 이해관계자 소통

당사는 주주, 잠재적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개방적이고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시를 통한 적시·정확한 정보 제공, 투자자와의 1:1 미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 제공 측면에서 당사는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 형태로 적시에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여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동등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국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이용해 정보(수시공시 또는 공정공시 형태)를 제공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대표이사가 공시제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지명한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공시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담당자는 공시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 아래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는 투자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기별 실적발표를 애널리스트 Conference Call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당사 실적에 관심 있는 애널리스트이면 누구든지 Call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이후에는 투자설명회(NDR) 개최 또는 증권사에서 주관하는 Conference 등에 참여하여 국내외 투자자들과 1:1 미팅 또는 그룹 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와의 미팅 시, 연 1회 이상 당사 CEO 또는 CFO가 직접 참여하여 당사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R&D부문과 협업하여 투자자 대상 기술 세미나 등의 Investors Forum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사회공헌

지속경영의 일환으로 당사는 사랑받는 기업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운영중인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입니다. 당사는 사업본부 별 봉사단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헌혈운동, 연탄배달, 불우학생 돕기 장학금 전달, 각종 지역 사회복지 행사 지원 및 협찬 등을 펼치고 있으며, 사랑의 오뎅이 휠체어는 수많은 시련 앞에 다시 일어난 '오뎅이 기업인' 윤곡 정인영 명예회장님의 불굴의 기업정신을 기리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로 고통을 받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선물하는 당사의 대표 캠페인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입니다. 당사는 천재 지변이나 인재로 발생한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물질적인 후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빈곤아동 Care 활동, 집수리 봉사활동, 결식아동 돕기, 독거노인 돕기, 장애인 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재해복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매결연입니다. 당사는 익산 창평마을, 원주 목화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마을 홍보 및 농산물직판행사, 농번기 일손돕기 등 자매결연 마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보전입니다. 당사는 각 사업본부 별 주변 지역의 산과 하천에 대한 자연 정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연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의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1사 1산 운동, 저탄소 녹색경영 협약, 쓰레기 정화활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오뎅이 휠체어>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장학기금>



<독거노인 돕기>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 별첨1.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만도라 한다. 영문으로는 Mando Corporation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동, 현가, 조향장치 기타 자동차부품의 설계, 조립, 제조, 공급 및 자동차부품의 마케팅, 판매업
2. 일반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3. 무역, 수출 및 수입업, 무역 대행업
4. 부동산임대업
5. IT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임대업
6. 교육 및 연수 서비스업
7. 휴게 음식업
8. 전기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9. 위 각 호와 관련된 사업 및 투자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and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오천만(1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1,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9,391,424주

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주식 및 이들을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이익배당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의 총수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수를 정한다.

②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3(의결권배제 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배제 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의 총수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수를 정한다.

②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배당(1종 종류주식과 혼합된 경우에는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8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업무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



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3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제17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업무제휴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업무제휴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

제33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7조(이사의 보선)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제39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43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7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장 계 산

제51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 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6조(중간배당) ①회사는 매 영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의 배당(이하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제8장 부 칙

제 1 조 (제정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설립일로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이사의 보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2014년 7월 28일자 분할 전 주식회사 만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

된 바에 따른다.

제 4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별첨2. 이사회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만도 이사회 (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 제 3 조 ( 권한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 4 조 ( 구성 )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부서를 두며 간사부서는 자금팀이 된다

#### 제 5 조 ( 의장 )

대표이사가 이사회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기획담당 사내이사, 영업담당 사내이사, 연구개발담당 사내이사, 사외이사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이 순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 6 조 ( 회의의 종류와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실시하며, 임시 이사회는 어느 이사의 요청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5]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 7 조 ( 성립 및 결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2. 이사회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상 결의요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상법상의 이사회 의결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승인
- 4) 사채의 발행
- 5)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6) 주식의 양도 승인
-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취소
- 8)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의 업무집행
  - 10)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 전입의 승인
  - 11) 중간배당의 승인
  - 12)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
  - 13) 기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나.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1) 연간사업계획의 승인
- 2) 최초사업계획의 중대한 수정 또는 변경
- 3) 회사자산에 대한 담보설정
- 4) 자회사 자본불입 및 차입을 위한 보증 승인
- 5) 중요한 기술, 특허 기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
- 6) 자본(금) 증가에 관한 사항
- 7)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 8 조 ( 부의 )

1. 이사회 의안은 각 이사가 발의 한다.
2.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각 이사는 상정 의안의 개요를 회의일 [5]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 본인에게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한다.

제 10 조 ( 위임 )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소관 업무 해당 임원에게 그 결정과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1 조 ( 의사록 )

1. 이사회 간사는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감사부서에서 보관한다.

제 12 조 ( 감사 )

1. 이사회에 감사를 둔다.
2. 이사회 간사는 재무담당 임원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 1 조 ( 제정시행일 ) 이 규정은 2014년 9월 2일부로 제정 시행한다.